

**Q** 대규모 군사연습이 평화를 지켜준다?

**&**

**A** NO! 오히려 긴장만 고조시켜!

- » 제임스 서먼 한미연합사령관은 UFG 군사연습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확인해 줄 것이라 주장.
- » 그러나, 군 정부 민간 등 모두 50여만명이 참가하는 UFG 연습 등 대규모 한미연합연습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전쟁위기를 심화시켜 온 주된 원인.
- » 2013년 3월에 열린 키리졸브/독수리연습(KR/FE)에는 B-52 전폭기, B-2 스텔스 전폭기까지 동원되어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고 간 바 있음.
- » **UFG 연습은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이후의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도 장애가 될 것임.**
- » 특히 올해 UFG의 경우, 북핵 선제타격전략이 적용되어 **한반도 핵전쟁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위험천만한 연습임.**

**Q** UFG(을지프리덤가디언)이 연례적 방어연습?

**&**

**A** **NO!** 명백한 공격 · 점령연습!

- » 2013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한미연합군사연습인 UFG가 진행됨.
- » 한미당국은 이 군사연습이 연례적 방어연습이라 주장하지만,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점령해 **북 정권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작전계획 5027**과 **북한 점령통치를 상정한 '응전자유화계획' (총무 9000)**에 따라 진행되는 이 연습은 명백한 북한 공격+점령 연습임.
- » 2010년 UFG 연습때는 평양 점령은 물론 김정일 위원장 생포 시나리오가 적나라하게 공개된 바 있음.
- » 더구나, 8만여명의 대규모 병력(미군 3만명, 한국군 5만여명)이 참가하는 이 연습에서 한미연합군은 **선제공격개념이 포함된 킬체인을 적용**할 예정이어서, 그 공격성이 한층 더 강화됨.

**Q** UFG는 합법적인 연습이다?

**&**

**A** NO! 정전협정, 유엔헌장, 헌법에 어긋나!

- » 한미연합사는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통상적 군사연습이라 주장.
- » 그러나 UFG는 ‘상대에 대한 적대행위의 금지’ 를 규정한 정전협정 2조 12항 위반.
- » 침략적인 대규모 군사연습은 유엔 헌장 2조 4항이 규정하는 ‘무력의 위협’ 에 해당하며, 우리 헌법의 내용(평화통일의 사명을 명시한 전문, 평화적 통일정책의 추진을 규정한 4조,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 5조 등)에도 정면으로 위배.
- » 뿐만 아니라, 남북간 합의인 7 4 남북공동성명, 남북기본합의서, 6 15 공동선언, 10 4 선언에도 위배.
- » 유럽의 경우, 4만명 이상 동원되는 군사연습의 경우 2년 전에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한미군당국은 북에 UFG 실시에 대한 통보를 불과 9일 전에 함.

**Q**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서는?

**&**

**A** 공격적 전쟁연습을 멈추고  
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.

- » 2013년은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.
- » **정전협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에 불과합니다.** 때문에, 우리 민족은 지난 60년 동안 소모적인 대결을 계속하며 전쟁의 위기와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  
니다.
- » 이제는 전쟁을 끝내고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. 이를 위해서는 **한국과 미국이 북에 대한 적대정책을 폐기**하고, 이에 상응하여 **북은 핵무기를 포기**하고, **한반도의 비핵화**를 이루며 **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** 바꾸어야 합니다.
- » 한미군당국은 한반도 긴장만 고조시키는 대규모 군사연습인 UFG를 당장 중단하고 **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미대화, 남북대화를 시작**해야 합니다.